

Q방법론을 활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Behavior using Q-Methodology

이 선 중(Lee, Sun Jo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atterns of perception on corruption behavio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Q-methodology, an approach designed to discover patterns in various subjectivity, is used.

As a result of analysis, six types of perception with respect to the corruption behavior have been extr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eoples are aware of corruption behavior based on their subjectiv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studies abou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s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for better grasping of corruption phenomenon.

Key words: Perception type of corruption, Corruption behavior, Q-methodology, Subjectivity

I. 서론

스캔들, 촌지, 리베이트, 급행료, 접대비, 뒷돈 등의 단어에서 부패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부패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의 개념이 포괄적이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수준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부패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부패가 아닐 수도 있고 또한 개인마다 부패행위를 바라보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패라고 인식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패가 아닐 수도 있고 부패가 아닌 현상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패로 인식될 수 있다.

체계적으로 부패의 개념을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부패행위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서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인사 청탁도 부패행위일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는 사람 혹은 자신의 친인척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부패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는 입장도 있다(Moore, 1997).¹⁾

또한 기관의 공금을 집단 또는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 되어서 이를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²⁾. 하지만 이와 같은 관행 및 연구주의적 행태는 결과론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이후 물질적 보상이나 금전적 보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부패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Moore, 1997; Tanzi, 1998).

Johnston(1986)은 부패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의 규모, 부패행위의 동기에 따라 부패행위의 판단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광국(1995)은 부패행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외국의 연구(Gardiner, 1970; Gibbons, 1989; Joseph, 1988, Peters & Welch, 1978)를 인용하면서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외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인식연구 결과들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상류층 주민들이 그리고 젊은 층이, 고학력자가 부패에 덜 관용적으로 나타났다.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 혹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은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가벼운 형태의 영향력 행사는 부패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명직 공무원보다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부패행위의 인식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차이 검증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사회구성원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논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한 부패행위 인식의 차이는 총량적인 부패인식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패행위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³⁾ 이상윤·이지문·박홍식(2006)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다른 변수와는 다르게 사회문화적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차이 검증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부패를 얼마나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지형을 살펴봄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 주관적 선호, 가치, 태도 등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Q방법론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1)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계약직 채용(헤럴드 경제, 2010.9.3)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구청 기능직 직원 채용(세계일보, 2012.5.11)과 관련하여 구청 현직 간부의 친인척을 뽑는 등의 사건 등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연고친화적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채용사례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부패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2) 국토부 연찬회 사건(헤럴드경제, 2011.9.26)은 잘못된 관행을 구성원들이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이런 점에서 고길곤·조수연(2011)은 관행수용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행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도를 관행의 유형, 규모, 공직자와 시민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은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 인식을 파악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Q방법론은 개인 내 차이를 밝히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Kerlinger, 1986) 부패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나 태도 등을 밝히는데 좀 더 명확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R방법론보다는 개인의 주관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통한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유형을 밝히는 것은 부패 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부패개념의 다양성

부패행위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다양한 인식양태를 보이는 것은 부패의 개념 자체가 현실에서 체계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정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원·김영세(2000)는 부패개념의 정립이 어려운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현상적 측면과 부패에 관한 학술적 연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상적 측면에서 첫째, 부패현상 자체는 시공간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부패한 행위로 규정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패가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국가에 살고 있더라도 어떤 집단이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부패현상이다. Heeks(1998)가 “너의 문화에서 X를 부정부패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문화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이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박광국·류현숙, 2009; 재인용). 둘째, 부패행위가 ‘비밀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에서 관찰되지 않는 부패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부패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부패연구 측면에서 볼 때, 첫째, 학자마다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 및 범주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 분야의 특성에 맞게 부패행위를 정의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패개념이 도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박광국·류현숙(2009)도 부패의 개념이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정립이 되지 않아 계량적 연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부패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제약이나 부패 추정의 비용적 측면으로 인한 부패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부패의 개념을 벗어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정의 및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박광국·류현숙(2009)은 Kaufmann et al.(2006)이 제시한 부패를 둘러싼 통념에 관해 논의하면서 부패행위의 특성 자체가 은밀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는 부패는 빙산의 일부이므로 최대한 양

적,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패연구에 있어서 측정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1>은 부패의 발생영역, 행위별,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는 부패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부패개념의 다양성

구 분		설 명	학 자
분석대상 영역별 정의	정치부패	정치권력 영역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간의 정부의 창출·유지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Friedrich(1972) 김해동·윤태범(1994)
	행정·관료부패*	공직자가 그들의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Theobald(1990) Huntington(1989) 전수일(1984)
	사법부패	법과 제도 그리고 관리상의 비합리성과 모순에 의하여 저지르는 행위	Peter & Welch(1978)
	민간부패	공권력과 사부문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와 공권력의 개입 없이 사부문 내의 개별주체에 의해 발생하는 부패	이문조·박광국·김지수·배병일(1996) 유엔반부패협약
분석대상 행위별 정의	뇌물 및 횡령	공직자가 규정된 직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시현되는 수단으로 뇌물수수 행위를 부패로 간주	Rose-Ackerman(1975) Rashid(1981)
	탈세 또는 세금포탈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포탈행위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	최영순(1997), Allingham & Snadmo(1972)
	로비행위	사적인 시인 또는 집단이 정부의 결정 및 특정한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Bhagwati(1980) Beck & Connolly(1996)
분석 접근방법별 정의	공직중심·시장중심·공익중심 접근	-부패의 원인이 공직에 있다는 관점 -부패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비용과 가격 등 부패를 시장현상으로 이해 -공익과 사익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익 저해행위	Heidenheimer(1989)
	개인적·사회문화적·제도적·체계적 접근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과 윤리 결여에서 찾는 접근 -사회구조적 역사전통에서 찾는 접근 -법과 기구 등의 결함에서 찾는 접근 -공직자와 고객의 속성 및 뇌물수수 과정을 동시에 파악하는 접근법	Johnston(1982) Braze(1989) Scott(1972)

	기능주의적·구조주의적 접근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소멸되는 개인적이고 부분적 차원의 문제 -사회발전의 논리 속에 필연적이고 구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는 먹이사슬관계	Werner(1983) Mamour & Auerbach (1977)
기타	규제이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재량권 문제	Stigler(1971) Peltzman(1976)
	지대추구행위론	공직유지를 통해 수취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이를 상실할 경우에 대한 보상의 일환	Tullock(1980) Niskanen(1971)
	지하경제이론	은밀히 이루어지는 뇌물과 반대급부의 매매과정을 구성하는 한 요소	Tanzi(1980)

자료: 이종원·김영세(2000)의 글을 표로 재구성하여 인용

*김영종(2000)은 행정관료부패를 접근방법에 따라 다시 자세히 구분을 하여 설명하고 있음

2. 부패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박광국·류현숙(2009)은 1997~2008년까지의 한국행정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부패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론연구와 경험연구 중 사례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는 부패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의 개념 자체가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패측정 및 부패실태를 파악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부패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패인식에 대한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부패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비교 및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부패인식의 상대적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국내 연구로는 김준석·조진만·엄기홍(2011), 박홍식·장지원(2011), 진중순·서성아(2007) 등이 있다. 김준석 외(2011)는 “왜 동일한 거시적 환경에서 응답자들이 부패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행정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공직사회부패에 대해서 연령 및 소득이 높으면 부패인식이 감소하고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식·장지원(2011)은 부패수준의 측정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유의미한 변수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설명력은 어떤지를 한국행정연구원의 2008년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패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력, 소득에

따른 부패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중순·서성아(2007)는 사람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동일한 사회에서도 부패로 보는 현상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연루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보다 부패연루행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ung(2003)은 부패수준에 관한 인식차이는 성별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그 사회구조의 시스템이 좀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성별도 유의미한 변수로서 작용하지만 사회구조(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선거민주주의)를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면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요인만을 대상으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은 그 영향력이나 설명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Aldrich & Kage(2003)는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연구한 결과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패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은 사회구조 및 사회화 과정(연령이 높을수록)을 통해 부패에 대한 민감성이 일정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부패행위 인식에 관해서는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부패의 실태 및 인식 등에 대한 연구들의 축적은 분명 현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부패현상의 은밀성과 부패의 사회적 개념을 고려한다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부패행위 인식의 차이에 대한 상이한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III. 연구 설계

1. Q방법론의 의의 및 절차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패행위 인식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왜 Q방법론을 선택했는가에 국한하여 Q방법론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⁴⁾

4) Q방법론의 철학적 배경 및 논쟁 등은 김순은(2007; 2010), 김현수·원유미(2000), 김흥규(2008) 등의 논문과 저서를 참조하길 바람.

Q방법론은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어 사회과학의 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Q방법론은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철학적, 심리학적 통계학적, 심리측정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규, 2008). Q방법론이 갖는 효용성을 요약에서 말하자면 인간의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이다(김순은, 2010). 박광국·류현숙(2009)은 부패 자체가 갖는 빙산모형이라는 특징과 부패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패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나 양적연구 두 방법 모두 어떤 것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 관련된 많은 질적, 양적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확인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영중(2006)이 제기하였던 통합적 부패연구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부패현상에 대한 방법론적 다각화를 통한 풍부한 연구가 부패 현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이나 주관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Q방법론은 P표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P표본이 인식하는 사회적 사실로서의 부패현상의 확인뿐만 아니라 각 유형화된 집단의 부패인식을 통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도출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패행위 인식에 대한 Q방법론적 접근은 실체론적 관점에서 구성주의적이나 실증주의적이나에 대한 통계학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성주의적 시각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 혹은 의미가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며 실증주의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관점이다(김순은, 2010).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을 측정하여 부패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다양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박광국·류현숙(2009)은 부패의 인식 및 부패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부패현상을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행위자와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의 관계에서 사회적 구조가 제공하는 규칙과 기회가 어떻게 행위자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부패행위로 도출되는지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부패행위라는 객관적 결과는 행위자의 해석과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행위자의 해석과정은 사회적 맥락이라는 객관적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내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부패행위의 인식이 어느 하나의 합치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Q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연구주제와 관련된 진술문을 작성하고 이 진술문은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을 Q모집단이라 하고 이 모집단에서 연구에 반영할 진술문이 Q표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중요성의 차이를 밝히는 방법이므로 대상자의 선정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지만 진술문에 대해 응답할 대상자를 선정한다(김현수·원유미, 2000). 응답을 받은 후 이를 ‘자기준거’에 따라 Q

분류관에 분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2. Q 표본 및 Q 모집단 구축

본 연구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Q표본 및 Q모집단을 구축하였다.

Q표본이란 전통적인 R방법론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과 유사한 것으로 Q방법론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변수가 되고 진술문을 분류한 연구대상의 집단이 Q요인이 되고 이에 따른 진술문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Q진술문의 설계와 작성에 있어 진술문의 출처와 설계에 따라 구술형과 추출형, 구조형과 비구조형을 분류하기도 한다(김순은, 2010). 또는 진술문의 표본을 자연적 표본과 기성적 표본, 비구조화 표본과 구조화 표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현수·원유미, 2000).

자연적 표본이란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직접 Q진술문을 취합하는 것으로 면접, 여론, 구술 방식 등이 있으며 기성적 표본은 연구대상의 의사가 아닌 다른 자료에서 Q진술문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등위척도 문항을 Q진술문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비구조화표본이란 한 변인 혹은 한 영역만을 진술하는 형태의 Q표본을 의미하고 구조화된 표본이란 어떤 가설이나 이론에 따라 Q진술문을 한 영역이 아닌 두 영역 또는 그 이상의 하위변인이나 차원으로 구분하여 진술문을 구성하는 것이다(김현수·원유미, 2000).

본 연구는 Q표본을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정도에 관한 등위척도 문항을 Q진술문으로 활용하는 기성적 표본을 채택하면서 부패행위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영역으로 분류한 구조화된 Q진술문을 구성하였다.

Q진술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직자 행동강령집의 사례 및 신문기사의 부패행위 등 실제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화하여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고길곤·조수연(2011)에서 제시된 관행수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Johnston(1986), James & David(2006)에서 부패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 배정환(2009)이 부패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거나 재인용하여 Q표본이 되는 진술문을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Q 표본(진술문)의 구성

Q 진술문의 내용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2.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3.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에게 오만 원을 주면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4.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직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5.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6.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교통경찰관에게 오만 원을 주면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발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7.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8.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9. 구청 공무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10.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구청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1.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에게 구청의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2. 구의회 의원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자식을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3. 공무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14. 공무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부서의 기관운영비로 쓴다.
15. 공무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어머니의 위암 수술비로 사용했다.
16.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했다 다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보고 하였다.
17. 구청 공무원은 직속상관이 기관의 자금유용 비리 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18.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구의회 전체 사무용품 공급계약을 맺는다.
19. 구청장 후보자가 한 주민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면 주민의 집 주변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
20. 민간기업 물품구매담당자가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21. 민간기업 물품구매담당자가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22. 민간기업의 한 회사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23. 민간기업의 인사부장이 자신의 아들을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24. 민간기업의 인사부장이 친구의 부탁으로 그 회사에 일할 수 있도록 친구 아들의 일자리를 구해 준다.
25.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26.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운영비로 쓴다.
27.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어머니의 위암 수술비로 사용했다.
28. 민간기업 직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했다 다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29. 민간기업 직원이 직속상관의 회사자금유용 비리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30. 민간기업 물품구매부장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기업의 전체 사무용품 공급계약을 맺는다.
31. 가게 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 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32.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다.
33. 구청장 후보자에게 한 주민이 자신의 집 주변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주면 지지해 줄

- 것을 약속한다.
34.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35.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자신의 부정행위는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다.
36.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가 없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37. 업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탁이나 뇌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3. P 표본의 선정

P 표본이란 Q 진술문에 응답하는 연구대상자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R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표본을 최대한 크게 하지만 Q 방법론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중요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대상자의 수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김현수·원유미, 2000; 김홍규, 2008).

다만 P 표본 선정 시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집방법을 따르면 되는데 P 표본 선정 시 개인에 대해 이미 알려진 특성을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면 된다. 즉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연령, 성별, 소득, 직업 등을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변인을 고려할 때 연구 목적이나 문헌연구의 검토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경험적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활용하는 층화표본이 될 수 있다.⁵⁾

Thompson(1966)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견은 상이한 수준의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표집함으로써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집단을 ① 연구주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② 판사나 배심원과 같이 모든 사실을 통해 공정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 ③ 현재 그 주제에 관해 권위자이거나 전문가, ④ 일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주제에 관해 정보가 어둡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여 표집한다면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홍규, 2008 재인용).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따른 부패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부패라는 주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해석과 판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별 개인이 상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층화표본적인 성격을 최대한 지키되 그렇게 표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였다.⁶⁾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은 기준을 갖고 P표본을 선정하였다.

5) 성별의 경우 남, 여로 구분하고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직업을 공무원, 사무직, 전문직으로 구분하여 P표본을 선정한다면 5X3X2가 되어 30명의 P표본을 구성할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 층화표본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명씩 표집을 한다면 그 표본의 수가 300(2X6X2X4X4)명 이상이 되어 Q방법론에서 지향하는 소표본 이론에 반하게 되고 현실적

<표 3> P 표본 수집 기준

변인	수준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① 20세 미만 ② 20~30세 미만 ③ 30~40세 미만, ④ 40~50세 미만, ⑤ 50~60세 미만, ⑥ 60세 이상
직업	① 공무원,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학생 ⑤ 주부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이상
월수입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미만, ③ 300~400미만, ④ 400이상

본 연구에서의 P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P 표본의 분포

학력 \ 연령/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총 인원 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고졸 이하	0	0	0	0	0	0	0	0	1	0	1
전문대 졸 및 대학재학(졸)	4	8	8	8	2	6	2	3	1	1	43
대학원 졸	0	0	4	4	4	1	0	1	1	0	15
총인원수	4	8	12	12	6	7	2	4	3	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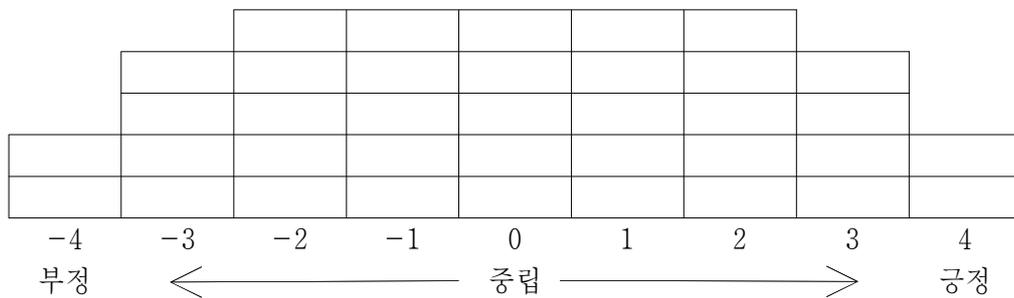
4. Q분류 및 자료처리

Q분류란 연구대상자들에게 주어진 Q진술문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분류하고 이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부터 가장 동의하는 것으로 동일선상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Q분류는 Q-sort라고 하는 전통적 분류방법, 조정된 순위절차 방법, 그래픽 척도 방법 등이 있다(김현수·원유미, 2000). 본 연구에서는 진술문에 대하여 ‘최대 동의-최소 동의’방식으로 진술문을 분류하는 전통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으로 20세 미만이면서 직업이 공무원인 연구대상은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진술문을 (+4~-4)의 척도로 구성된 9단계 측정을 하였다. 또한 부패인식과 관련하여 정상분포에 가깝게 구성하되 분포의 모양을 다소 납작하게 구성하여 '동의-부동의'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척도와 관련하여 Brown(1980)은 40개 이하의 진술문은 (+4~-4)의 9단계, 40~60개의 진술문은 11단계(+5~-5)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Q분류는 일반적으로 40~50개의 진술문에 대해 11단계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포의 모양은 연구주제가 단순하거나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면 정규분포에 가깝게 하는 것이 적합하며 논쟁적인 주제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진술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분포의 모양을 다소 납작하게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김홍규, 2008).



<그림 1> Q표본 분류판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자들(P 표본)에게 Q 분류를 시행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Q진술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재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개발된 진술문을 Q소팅을 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1명은 1일 후 다른 한 명은 5일 후에 다시 한 번 소팅을 하도록 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하루를 두고 분류한 Q 소팅은 유의수준 .01에서 상관계수가 .88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일 격차를 둔 Q 소팅의 경우 유의수준 .01에서 상관계수가 .94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Q 진술문의 신뢰도 검증에서 유의미하다고 제시되는 값은 0.3 정도이고 통상적으로 엄격성을 고려하면 0.7에서 0.8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높은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김홍규, 2008), 본 연구에서 검증한 값은 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행위에 관한 인식유형의 차이를 측정하는 Q진술문은 신뢰도가 높은 도구라고 볼 수 있다.

Q분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4)을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동의하는 것(4)에는 9점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채코딩을 하였다.

코딩한 자료는 PASW 18.0을 활용하여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이겐 값이 1이상을 기준으로 유형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은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적재값이 큰 값에 따라 P 표본(연구대상자들)을 배열하였다.⁷⁾ 그리고 각 유형별로 요인적재값이 큰 개인에 대해

여 사후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태도에 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인터뷰를 실시한 이유는 인터뷰를 통해 각 유형간의 고유성을 확인하여 각 유형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개방형 질문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은 각 유형간 요인적재값이 높은 대상으로 하되 사후인터뷰가 불가능할 경우 그 다음순의 대상을 선정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37개의 진술문 중 상대적으로 가장 부패한 행위라고 생각한 진술문(+4에 위치한 2개의 진술문)과 부패하지 않은 행위라고 선택한 진술문(-4에 위치한 2개의 진술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 우리 사회의 부패의 원인과 이 원인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대처방안, 공직자의 부패와 민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비교했을 때 어느 분야가 더 심각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IV. 분석 및 논의

1. 유형의 구분

연구대상자(P표본)를 대상으로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인식유형간 특징을 구분하기 위해 고유값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입력한 결과, 유형의 설명력이나 상관관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6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70.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이 16.59%, 유형2가 13.98%, 유형3이 13.11%, 유형4가 10.90%, 유형5가 8.87%, 유형6이 6.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간 상관관계는 .668부터 .327까지로 나타났으며 유형1과 유형3이 .668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5는 유형3과 유형4, 그리고 유형6과 유형5는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R방법론에서는 상관관계 값이 크면 다중공선성을 검토해야하지만 Q방법론에서 각 유형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인식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요인추출과정과 요인회전과정에 R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이 사용되며 아이젠값을 기준으로 요인수를 결정하는데 그 최소기준이 1이지만 Q방법론에서의 요인분석은 센트로이드 방식이 추천되며 회전방식은 R의 경우 베리맥스가 주요하게 사용되고 Q 방법론은 임의회전이 권장된다. 하지만 실제 베리맥스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많다(김순은, 2010).

<표 5> 각 유형별 고유값 및 설명력과 상관관계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고유값	9.788	8.251	7.738	6.434	5.235	4.010
분산	16.590	13.985	13.115	10.905	8.872	6.796
누적분산	16.590	30.575	43.690	54.596	63.468	70.264
상관관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1	1					
유형2	.572**	1				
유형3	.668**	.520**	1			
유형4	.504**	.478**	.526**	1		
유형5	.327*	.437**	.151	.242	1	
유형6	.493**	.455**	.455**	.604**	.304	1

** 상관계수는 0.01수준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수준에서 유의

<표 6>은 P표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6가지 인식유형 중 제1유형은 15명, 제2유형은 13명, 제3유형은 12명, 제4유형은 8명, 제5유형은 6명, 제6유형은 5명으로 구분되었다.

<표 6>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유형	p표본	요인값	성별	나이	월소득	학력	직업
제1유형 (n=15)	28	.864	남	50대	400만 이상	전문대졸	사무직
	22	.860	여	30대	-	대졸	주부
	54	.835	남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56	.750	여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21	.702	남	50대	200 ~ 300	전문대졸	사무직
	4	.692	여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12	.654	남	30대	200미만	대졸	학생
	10	.642	여	60대	200 ~ 300	전문대졸	주부
	48	.621	여	40대	300 ~ 400	대졸	전문직
	20	.609	여	40대	-	전문대졸	주부
	3	.587	여	30대	300 ~ 400	박사졸	전문직
	18	.585	여	20대	200미만	대학재학	학생
	55	.549	남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23	.542	남	30대	300 ~ 400	대졸	사무직
	8	.523	남	30대	200만 미만	석사졸	학생

제2유형 (n=13)	59	.824	여	20대	200만 미만	대학졸업	사무직
	11	.804	남	60대	200 ~ 300	대학원졸	전문직
	9	.757	남	30대	200만 미만	대학졸업	학생
	25	.698	남	60대	400만 이상	대졸	사무직
	27	.689	남	40대	400만 이상	박사졸	전문직
	5	.657	여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6	.646	여	30대	200만 미만	석사졸	전문직
	37	.576	여	50대	300 ~ 400	대졸	공무원
	50	.572	남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51	.559	여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36	.519	남	40대	300 ~ 400	대졸	공무원
	7	.498	여	30대	200 ~ 300	박사졸	전문직
13	.488	남	40대	300 ~ 400	박사졸	전문직	
제3유형 (n=12)	57	.826	여	30대	200 ~ 300	대졸	사무직
	24	.731	여	30대	200만 미만	석사졸	전문직
	38	.725	여	40대	300 ~ 400	대졸	공무원
	34	.706	남	30대	300 ~ 400	대졸	전문직
	53	.695	여	20대	200만 미만	대학재학	학생
	52	.681	남	20대	-	대학재학	학생
	30	.674	여	30대	200 ~ 300	대졸	공무원
	35	.629	여	40대	300 ~ 400	대졸	공무원
	33	.568	여	30대	200 ~ 300	대졸	공무원
	49	.556	여	50대	400이상	대졸	주부
	41	.538	남	30대	200 ~ 300	대학졸	사무직
58	.486	여	30대	200 ~ 300	대졸	사무직	
제4유형 (n=8)	1	.737	남	30대	200만 미만	석사졸	학생
	29	.711	여	50대	400이상	석사졸	공무원
	40	.707	여	50대	400이상	대졸	공무원
	31	.657	남	30대	200 ~ 300	석사졸	공무원
	26	.648	남	40대	400이상	박사졸	전문직
	14	.620	남	30대	200만 미만	박사졸	전문직
	32	.516	여	30대	200 ~ 300	대졸	공무원
	17	.492	남	40대	300 ~ 400	대졸	전문직
제5유형 (n=6)	45	.881	여	40대	400이상	대졸	주부
	43	.848	여	40대	400이상	대졸	전문직
	42	.814	여	40대	400이상	석사졸	전문직
	44	.612	남	30대	400이상	대졸	전문직
	39	.583	남	40대	400이상	석사졸	전문직
	16	.521	여	30대	200 ~ 300	대졸	전문직
제6유형 (n=5)	2	.784	남	60대	200만 미만	고졸	기타
	46	.532	여	30대	300 ~ 400	전문대졸	전문직
	15	.517	남	30대	400이상	대졸	전문직
	19	.511	여	20대	-	대학재학	학생
	47	.505	남	30대	200 ~ 300	전문대졸	전문직

2. 부패행위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유형별 표준점수를 ± 1 이상의 진술문을 토대로 구성하여 유형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 1 이상의 진술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진술문들이 좀 더 각 유형을 특정화하는데 각 유형 내의 구성원들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1 이하의 진술문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1) 제1유형

제 1유형은 부패행위를 좁게 해석하는 유형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법행위를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패행위 민감성과 관련된 진술문(34, 36, 37)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패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제1유형(표준점수 ± 1 이상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2.337
4.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직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1.854
13.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1.451
2.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1.128
8.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 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1.168
10.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구청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168
31. 가게 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 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1.813
36.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성 문제가 없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1.692
37. 업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탁이나 뇌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1.531
34.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1.451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요인적재값을 나타낸 응답자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민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공무원이

대가성을 기준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부패로 인식하지만 민간인이 추구하는 지대 추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 질의 내용	진술 내용
상대적으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정한 이유 (1번 진술문과 8번 진술문 선택)	-공직자의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있는 행위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정한 이유(31번 진술문과 33번 진술문 선택)	-세금탈루의 의혹은 있으나 어쨌든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므로 부패라고 보기 어려움 -후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부패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부패발생 원인	-민간업체 직원보다 보수가 낮다는 점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 -국민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로 상정하는 경향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와 민간 비교	-공직자의 부패는 부패행위 인식을 심각하게 만들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간부분보다 좀 더 절제된 생활 필요

p표본28 응답자: 2012. 7. 6.

2) 제2유형

제2유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를 상대적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면서 동일하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제2유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 이외에는 공직이든 민간이든 개인의 도덕적 행위나 지대추구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제2유형(표준점수 ± 1 이상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2.156
4.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직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1.927
13.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1.284
2.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1.422

5.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1.055
25.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1.101
22. 민간기업의 회사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1.881
9. 구청공무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1.835
31. 가게 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 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1.697
33. 구청장 후보자에게 한 주민이 자신의 집 주변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주면 지지해 줄 것을 약속한다.	-1.422
19. 구청장 후보자가 한 주민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면 주민의 집 주변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	-1.192

p표본 11번 응답자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진술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패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이든 민간이든 불법적 행위는 부패행위로 인식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터뷰 질의 내용	진술 내용
상대적으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정한 이유 (1번 진술문과 4번 진술문 선택)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부패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각한 부패행위임 -민간기업 직원의 횡령행위도 기업의 구성원 전체가 피해대상이 되므로 부패한 행위임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정한 이유(9번 진술문과 19번 진술문 선택)	-해당 진술문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이를 부패로 보기는 어려움
부패발생 원인	-관리감독자의 직무유기 -감독자(기관)의 부패척결 의지 부족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와 민간 비교	-수요가 있어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공직자의 부도덕성보다 일반 국민의 부도덕성을 자기방어적 측면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은 일정정도 국민들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p표본11 응답자: 2012. 7. 9.

3) 제3유형

제3유형은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부패한 행위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하게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상대적으로 부패한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제3유형(표준점수 ± 1 이상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0.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구청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840
12. 구의회 의원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자식을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598
13.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1.550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1.404
11.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에게 구청의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356
18.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구의회 전체 사무용품 공급계약을 맺는다.	1.065
31. 가게 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 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1.695
28. 민간기업 직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했다 다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1.648
22. 민간기업의 회사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1.501
16.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했다 다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1.356
9. 구청공무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1.114
6.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교통경찰관에게 오만 원을 주면서 교통법규 위반고지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1.065
29. 민간기업 직원이 직속상관의 회사자금유용 비리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1.065
36.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가 없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1.065
17. 구청 공무원은 직속상관이 기관의 자금유용 비리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1.017

p표본24의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진술을 살펴보면 유형분류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일자리 청탁이나 알선, 연고온정주의적 인사행태에 대해서 가장 부패한 행위로 생각하면서 이를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다고 생각한 진술문에 대해서도 그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3유형의 P표본이 동의하고 있는 부패하지 않은 행위의 진술문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인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질의 내용	진술 내용
상대적으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정한 이유 (11번 진술문과 12번 진술문 선택)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연줄을 이용하여 취업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행위임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정한 이유(9번 진술문과 36번 진술문 선택)	-개인의 아픔과 별개로 동료나 조직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음 -과정상의 부정이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음
부패발생 원인	-첫째는 공공부분의 업무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일 자체가 개인의 성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같은 문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봄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와 민간 비교	-둘 다 문제이지만 공직사회의 부패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반사회적인 정서를 팽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p표본24 응답자: 2012. 7. 11.

4) 제4유형

제4유형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행위(진술문 18, 19, 10)를 다른 행위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일반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4유형은 3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제4유형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3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4유형은 부패행위 인식에 있어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좀 더 강하게 부패한 행위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제4유형(표준점수 ± 1 이상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8.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구의회 전체 사무용품 공급계약을 맺는다.	1.812
19. 구청장 후보자가 한 주민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면 주민의 집 주변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	1.586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1.435
8.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1.284
14.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 운영비로 쓴다.	1.208
10.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구청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132
2.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1.132
13.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1.057
31. 가게 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 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1.586
9. 구청공무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1.359
23. 민간기업 인사부장이 자신의 아들을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284
20. 민간기업 물품구매담당자가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1.208
29. 민간기업 직원이 직속상관의 회사자금유용 비리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1.208
24. 민간기업 인사부장이 친구의 부탁으로 그 회사에 일할 수 있도록 친구 아들의 일자리를 구해 준다.	-1.132
27.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어머니의 위암 수술비로 사용했다.	-1.132
28. 민간기업 직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했다 다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1.132
26.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 운영비로 쓴다.	-1.057

제4유형 중 요인적재값이 높은 p표본 1번 응답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행위를 인식할 때 불법적 행위도 문제이지만 권력남용의 경우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크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부패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4유형의 경우 선출직인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에 대한 부패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패한 행위로 인식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진술문으로 9번과 22번을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 질의 내용	진술 내용
상대적으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택한 이유(18번 진술문과 35번 진술문 선택)	-불법적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으나 권력남용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택한 이유(9번 진술문과 22번 진술문 선택)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 문제이므로 조직구성원이나 조직에 큰 영향이 없음
부패발생 원인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와 민간 비교	-공직자의 부패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민간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에 공공부문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p표본1 응답자: 2012. 7. 3.

5) 제5유형

제5유형은 공직자와 민간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자리에 대한 청탁이나 부탁의 경우 부패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유형은 일자리 부탁이나 청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연고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잘못된 행동의 경우 둔감하게 반응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제5유형(표준점수 ±1이상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2.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2.000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1.809
5.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1.238
21. 민간기업 물품구매담당자가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1.143

14.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 운영비로 쓴다.	1.143
4.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1.047
26.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 운영비로 쓴다.	1.047
30. 민간기업 물품구매부장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기업의 전체 사무용품 공급계약을 맺는다.	1.047
12. 구의회 의원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자식을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714
10.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구청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524
7.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 부터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1.428
37. 업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탁이나 뇌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1.333
31. 가게 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 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1.047

제5유형에 속하는 p표본 39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부패한 진술문 선택의 이유를 살펴보면 횡령이나 리베이트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소한 선물이나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5유형의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진술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질의 내용	진술 내용
상대적으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택한 이유 (4번 진술문과 13번 진술문 선택)	-횡령이나 리베이트는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택한 이유(7번 진술문과 23번 진술문 선택)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며, 기업에서 자신의 친인척을 고용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시각이 변화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음
부패발생 원인	-공직이라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와 민간 비교	-공직사회는 사회를 선도할 필요가 있는 집단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생하는 부도덕적 행위보다는 공직사회의 부정한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봄

p표본39 응답자: 2012. 7. 15.

6) 제6유형

제6유형은 제4유형과 비슷한 인식유형으로 볼 수 있다(상관관계: .604). 선출직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제6유형(표준점수 ± 1 이상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2.182
2.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1.819
10.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구청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455
8.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1.333
4.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1.333
11.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에게 구청의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1.212
18.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구의회 전체 사무용품 공급계약을 맺는다	1.091
26.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 운영비로 쓴다.	-1.819
29. 민간기업 직원이 직속상관의 회사자금유용 비리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1.576
15.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어머니의 위함 수술비로 사용했다.	-1.333
7.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1.212
24. 민간기업 인사부장이 친구의 부탁으로 그 회사에 일할 수 있도록 친구 아들의 일자리를 구해 준다.	-1.212
31. 가게 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 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1.212
14. 공무원이 실제보다 5% 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 운영비로 쓴다.	-1.091

p표본 2번 응답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다수가 용인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를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행위로 생각하는데 제6 유형에서 부패행위로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14, 15, 26, 29번 진술문)과 동일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질의 내용	진술 내용
상대적으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택한 이유 (21번 진술문과 37번 진술문 선택)	-소정의 선물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나 되는 상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이며, 뇌물이나 청탁을 한다는 것은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진술문으로 선택한 이유(15번 진술문과 27번 진술문 선택)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그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비용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동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발생 원인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보다 상위직 공무원들이 문제인 것 같다. 장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와 민간 비교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민간보다는 좀 더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p표본2 응답자: 2012. 7. 15.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표 13>은 부패행위에 대해 각 유형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긍정 혹은 부정하는 유형에 대해서 종합하여 비교를 하였다.

모든 유형이 진술문 1에 대해서는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 4, 8, 10, 13, 18번 진술문에 대해서는 세 그룹 이상이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9, 29번 진술문에 대해서 세 그룹 이상이 다른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부패행위 인식 유형별 표준점수 비교 종합

진술문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1. 구청 회계담당공무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 ▲▲▲	▲▲ ▲▲	▲	▲▲	▲▲▲	▲▲▲ ▲▲
2.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	▲▲▲		▲▲	▲▲▲ ▲▲	▲▲ ▲▲
4.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직원이 천만 원을 횡령했다.	▲▲▲	▲▲ ▲▲			▲	▲▲
5.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			▲▲	
6.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교통경찰관에게 오만 원을 주면서 교통법규 위반고지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			
7.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	▼
8. 구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이 물품을 납품하고자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			▲▲		▲▲▲
9. 구청공무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	▼	▼▼		
10.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구청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		▲▲ ▲▲	▲▲	▼	▲▲▲
11.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지지자에게 구청의 일자리를 구하여준다.			▲▲			▲
12. 구의회 의원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자식을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준다.			▲		▼	
13. 공무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개인적으로 쓴다.		▲▲	▲▲▲	▲		
14. 공무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부서의기관운영비로 쓴다.					▲	▼
16.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했다 다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			
17. 구청공무원이 직속상관의 기관 자금유용비리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			
18.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구의회 전체 사무용품공급계약을 맺는다.			▲	▲▲▲		▲▲

19. 구청장후보자가 주인에게 자신을 지지하면 주인의 집주변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		▼		▲		
20. 민간기업 물품구매담당자가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		
21. 민간기업 물품구매담당자가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	
22. 민간기업의 회사원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자신의 개인적 일을 처리했다.		▼▼	▼			
23. 민간기업의 인사부장이 자신의 아들을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		
24. 민간기업의 인사부장이 친구의 부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친구아들의 일자리를 구하여 준다.				▼		▼▼
25.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		▲				
26.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기관운영비로 쓴다.				▼	▲	▼▼
27.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보다 5%늘린 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그 늘린 만큼의 돈을 받아서 어머니의 위암수술비로 쓴다.				▼		
28. 민간기업 직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위해서 퇴근했다 다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	▼		
29. 민간기업 직원이 직속상관의 회사 자금유용비리 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	▼▼		▼▼▼
30. 민간기업물품 구매부장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용품점과 기업의 전체 사무용품 공급계약을 맺는다.					▲	
31. 가게주인이 물품을 산 구매인에게 물건값을 싸게 준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 ▼▼▼▼	▼▼▼▼ ▼▼	▼▼ ▼▼	▼▼▼▼	▼	▼▼
33. 구청장후보자에게 주인이 자신의 집주변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주면 지지해 줄 것을 약속한다.		▼				
34.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면 부정행위를 사용할 것이다.	▼					
35.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자신의 부정행위는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와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다.						
36.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가 없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		▼			
37. 업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탁이나 뇌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	

주1: ▲는 +1이상의 진술문을 의미하며 개수의 차이는 동일 진술문에 대해서 좀 더 표준점수가 큰 것을 의미하며 ▼는 -1이상의 진술문을 의미하며 개수의 차이는 동일 진술문에 대해서 각 유형 중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함

주2: 음영 표시는 부패행위 인식에 대해서 인식유형 중 3개 유형 이상 동일하게 부패 혹은 부패하지 않은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주3: 진술문 3, 15, 32는 표준점수가 ±이상을 보이는 유형이 없어 표에서는 진술문을 삭제하였음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징 등을 좀 더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표 14>의 구분에 따라 진술문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그 값을 가지고 어떤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표시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인식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각 유형별 특징 종합 비교

인식유형	구분	부패행위	행위주체 구분 (공무원/민간)	부패행위 동기고려	부패행위 정도	지대추구 행위	연고온정 주의	민간의 도덕적 해이	부패민감성
1유형		●●●● ●●●●	●●●●	◇◇◇◇◇	●●		●	◇◇◇◇ ◇◇	◇◇
2유형		●● ●●		◇◇◇		◇		◇◇ ◇◇	●●●
3유형		●●●●	●●	◇◇		●● ●	●● ●●	◇◇	◇
4유형		●●●● ●●		◇◇◇◇ ◇◇	●	●● ●●	●● ●	◇◇ ◇	●●
5유형		●●	●	◇	◇	●	◇	◇	
6유형		●	◇	●		●●	●●		●

주1: ● 상대적으로 강함(+1이상의 값), ◇ 상대적으로 약함(-1이상의 값)

주2: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진술문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장 큰 점수를 갖는 것을 토대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첫째, 범법행위의 경우 진술문의 주체가 공무원이 되는 진술문(1, 2, 3, 7, 8, 13, 14, 15)을 대상으로 유형별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모든 유형이 이 진술문에 대해서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유형이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술문의 행위를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술문 중 행위주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진술문의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1, 3, 5유형은 동일한 행위여도 공직자의 행위를 더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유형만이 이러한 공직과 민간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패행위의 동기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진술문(13, 14, 15)의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제6유형은 부패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여 부패행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은 동기와 상관없이 그 행위를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패행위의 정도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서 Q진술문(7, 8)을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1유형과 4유형이 부패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패행위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액수의 규모 등에 따라서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유형별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Q진술문(18, 19)의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 3, 4, 5, 6유형은 지대추구행위를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 2유형은 지대추구행위를 부패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고온정주의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사와 관련된 Q진술문(10, 11, 12)의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 1, 3, 4, 6유형은 이를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유형 중 제3유형이 가장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제5유형은 연고온정주의 인사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부패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진술문 이외에 민간의 인사 관련 진술문 23, 24번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민간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진술문(31, 32)의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 6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이에 대해서는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유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의 부패민감성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진술문(34, 35, 36, 37)의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 2, 4, 6유형이 부패행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유형과 3유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향후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 및 인식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통적인 변인과의 인과관계 추론을 적용하는 R방법론을 활용하여 왜 이러한 시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이 얼마나 더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향후 진행한다면 부패현상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부패인식의 정도는 합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연령, 성별, 학력 등에 의한 부패행

위 인식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국내나 국외에서도 비슷하다. 이상윤 외(2006)가 지적했듯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부패현상을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난다. 최순영·김호섭·박홍식(2011)은 윤리위반행동의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는데, 윤리위험인지와 윤리문화의 정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건전한 조직풍토와 공직자의 의무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의·김영우(2011)의 윤리적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경향 검토 결과 개인적 속성은 합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논하면서 사회관계적 측면의 변수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다중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즉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혀 있을수록 뇌물의 불법성 인지나 처벌가능성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김우식(2011)의 연구결과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불법행위인 뇌물공여, 횡령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는 부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실주의적 행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Johnston, 1986)는 부패현상의 해석에 있어 사회관계적 측면의 변수를 통한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교육이나 소득수준은 사회문화적 특성인 사회다중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인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연계가 좀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패민감성이 가장 약한 1유형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고온정주의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변수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구분하여 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기준과 부패행위를 바라보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Q방법론을 활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을 구분해 본 결과 크게 6가지로 구분되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부패 개념의 다양성을 논의하였듯이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부패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부패한 행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패한 행위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 사회 내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은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와 부패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공유가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것이라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합적 연구와 실무적인 전략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패행위에 대한 다양한 인식유형을 통해 지금까지의 부패행위의 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검증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 관계지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나 개인의 내적 특성이 반영된 변수를 추가하여 부패인식에 관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 유형의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느 한 변수를 특정지어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Q방법론에서 중시하는 개인의 주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경험적인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셋째,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부패통제전략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패통제전략 수립 시 다양한 인식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범법행위 혹은 법적으로 부패행위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교육 및 윤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부패 자체가 갖는 빙산모형이라는 특징과 부패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통합적 부패현상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박광국·주효진, 2009; 김영중, 2006) Q방법론을 활용한 부패행위의 인식유형에 관한 본 연구가 부패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 태도 및 속성을 밝히므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을 밝히는데 유용하였지만 이에 대한 일반화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부패행위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Q방법론은 전통적 R방법론과 비슷한 인구통계학적 검증인 인구통계분할 검증⁸⁾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측정을 하지 못해 기존의 인

8) 이는 Q-Block Test로 도출된 유형을 토대로 진술항목 표준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과 차별성을 보이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질문지로 구성하고 이를 응답자들에게 평가하도록

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검증결과와 얼마나 유사하게 유형들이 분포하는지를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인식유형을 참고하여 부패관련 정책 수립 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여 그 응답자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Q-Block Test는 신뢰도가 높은 사정도구로 각 유형들이 얼마나 존재하며 지역적 분포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아는데 유용한 도구이다(Talboot, 1963).

참 고 문 헌

- 고길곤·조수연. (2011).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순은. (2007).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 _____.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1-25.
- 김영중. (2000). 「부패학」. 서울:송실대학교출판부.
- _____. (2006). 부패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1(1):1-21.
- 김우식. (2011). 사회연결망이 뇌물의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16(2):25-49.
- 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 부패인식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343-371.
- 김진의·김영우. (2011).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6(4):25-48.
- 김해동·윤태범. (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 김현수·원유미. (2000). 「Q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홍규. (2008). 「Q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광국·류현숙. (2009). 부패연구를 위한 인식, 실태, 제도의 통합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홍식·장지원. (2011). 부패 수준의 측정과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16(1):1-22.
- 배정환. (2009). 대학생들의 사회표상 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4(2): 109-128.
- 이문조·박광국·김지수·배병일. (1996). 「부패의 현상과 진단」.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14집,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상윤·이지문·박홍식. (2006). 비윤리적 행위의 인지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부패학회보」, 11(3):1-18
- 이종원·김영세. (2000). 「부패와 경제」. 서울: 도서출판 해남.
- 전수일. (1984). 관료부패연구: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회보」, 18(1): 143-163.
- 진종순·서성아. (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논총」, 45(3):233-257.
- 최순영·김호섭·박홍식. (2011). 공직윤리 위반행동의 영향요인. 「한국부패학회보」, 16(4):65-86.
- 최영순. (1997). 개인소득세의 탈세규모: 추정방법의 검토와 실증. 한국공공경제학회 제7차 학술대회 논문집.

- Aldrich, Daniel & Kage, Rieko. (2003). Mars and Venus at Twilight: A Critical Investigation of Moralism, Age Effects, and Sex Dif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24(1):23-40.
- Allingham, M. G. &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28-338.
- Beck, R. L. & J. M. Connolly. (1996). Some Empirical Evidence on Rent-seeking. *Public Choice*. Vol. 87, pp.19-33.
- Bhagwati, J. N.(1980). Lobbying and Welfa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355-363.
- Braze, H. A. (1989). Sociology of Corruption in A.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Friedrich, Carl J. (1972). *The Pathology of Politics: Violences, Betrayal, Corruption, Secrecy, and Propaganda*. New York: Harper & Row.
- Gardiner, Jhon A. (1970). *The Politics of Corruption: Organized Crime in an American City*. New York: Russel Sage.
- Gibbons, Kenneth M. (1989). Toward an Attitudinal definition of Corruption, in A.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 Heeks, Richard. (1998). *Information and Public Sector Corruption, Information Systems for Public Sector Management*.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 4, 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Manchester.
- Heidenheimer, Anold J. (1989). Perspectives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A.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 Huntington, Samuel P.(1989). Modernization and Corruption in A. J. Heidenheimer et al., eds.,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 Johnston, Micheal. (1982).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 Cal.: Brooks Cole.
- _____. (1986). Right & Wrong in American Politics: Popular Conceptions of Corruption. *Polity*, 18(3): 367-391.
- Joseph, Lawrence B. (1988). *Attitudes Of Community and Civic Leaders toward Political Corruption: A Report to the Chicago Ethics Project*. Chicago MetroEthics Coalition.
- Kerlinger, F. H. (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3rd ed., New York: Holt, Finehavr and Winston.
- Mamouru, S. & Auerbach. (1977).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al Structure. *Asian Survey*, Vol.17.
- McCann, James A. & Redlawsk, David P. (2006). As Voters Head to the Polls, Will They Perceive a "Culture of Corruptio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9(4):797-802.
- Moore, Stephen. (1997). *Power and Corruption, London: Vision*.
- Niskanen, W. (1971).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Aldane

- Atherton.
- Peltzman, S. (1976). Towards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XX, pp.322-340.
- Peters, John G. & Susan, Welch. (1978). Political Corruption in America: A Search for Definition and a Theory, or If Political Corruption Is 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Politics Why Is It Not 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Politics Research?.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3): 974-983
- Rashid, Salim. (1981). Public Utilities in Egalitarian LDC's: The Role of Bribery in Achieving Pareto Efficiency. *Kyklos*, 34:448-460.
- Rose-Ackerman, Susan. (1975). The Economics of Corrup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87-203.
- Scott, James C. (1972).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Prentice Hall.
- Stigler, G. J.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2 pp.3-21.
- Sung, Hung-En. (2003). Fairer Sex or Fairer System? Gender and Corruption Revisited. *Social Forces*, 82(2):703-723.
- Tanzi, Vito. (1980). *Underground Economy Built of Illicit Pursuits is Growing Concern of Economic Policymakers*. IMF Survey. pp34-37.
- _____.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 Consequences, Scope, and Course*. IMF Working Paper 98/63, Washington: IMF.
- Theobald, R. D. and R. E. Wagner. (1990). *Corruption, Development and Under Developmen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Tullock, G. (1980). Efficient Rent Seeking in J. M. Buchanan, R. D. Tollison, and G. Tullock, eds., *Towards a Theory of Rent Seeking Society*.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 & M University Press.
- Werner, Simcha B. (1983).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2):146-154.
- 헤럴드경제(2010.9.3). 유명환 외교장관 딸 특채, 행안부 전격 특감 착수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00903000744&md=20100903192622_C; 검색일: 2012.7.5)
- 헤럴드경제(2011.9.26). 국토부 주관 연찬회, 지난해만 40건...비용 업체 전가 의혹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10926000092&md=20110926085924_C; 검색일: 2012.7.5)
- 세계일보(2012.5.11). 10급 공무원 채용 75%가 친인척 어딘가 했더니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511020324&subctg1=&subctg2=>검색일: 2012.7.5)
- 유엔반부패협약(<http://ti.or.kr/x/UNCAC>)

투고일자 : 2012. 07. 27

게재일자 : 2012. 09. 13

국문초록

Q방법론을 활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이선중(서울시립대)

본 연구는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패턴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다양한 주관성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Q방법론을 활용하였
다.

분석결과, 부패행위에 관한 인식유형이 6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
이 부패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주관성에 따라 부패행위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패현상을 좀 더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패현상에
대한 인식을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부패행위 인식유형, 부패행위, Q방법론, 주관성